

날짜

고객님, 안녕하세요

RE: 고객번호: N/A

아시다시피, 사건명 *Jones v. City of Los Angeles*, 사건번호 BC577267로,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부(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LADWP")의 고객들이 LADWP의 하자 있는 신규 과금 시스템의 실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청구 또는 기타 청구 오류를 겪었거나, LADWP의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이하,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합의와 관련해 LADWP는 이 편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위에서 확인된 계좌에 대해 현장 조사 작업이 임박했음을 귀하에게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귀하의 계좌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이 편지를 받으신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LADWP 요금 합의 클레임 관리관 P.O. Box 43449 Providence, Rhode Island 02940-3449의 클레임 관리자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 작업의 목적은 공공 요금의 과도한 청구나 기타 귀하의 손실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현장 조사 작업이 완료되면, LADWP는 해당 조사 작업과 관련한 결정 사항을 귀하께 서한을 통해 통지해 드릴 것입니다. **현장 조사 작업에서 드러난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결정 서한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의 소인이 날인된 청구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서한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 1-844-899-6219로 클레임 관리관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의 관리관